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남 해 석 의원)

의 안 번 호	26-143

발의년월일: 2026. . .

발 의 자: 남해석, 원성혜, 채종민, 고안경, 백남환, 장덕준, 강수영, 차해영, 장정희, 한송이, 허디모데, 장영준 의원(12인)

1. 제안이유

○ 실버합창단원의 신규 위촉 연령 상한을 높이고 활동 가능 기간을 연장하여 고령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단원 자격 상실에 따른 해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연·연습 및 이에 수반되는 이동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여 구립예술합창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단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버합창단원의 신규 위촉 연령 상한을 75세에서 77세로 높여 위촉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8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이 지나면 당연 해촉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나.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해촉 사유로 신설함(안 제9조제4호).

다. 구청장이 구립예술합창단의 공연·연습 및 이에 수반되는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소관부서: 문화예술과

라. 입법예고: 2026. 11. 9 ~ 11.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실버합창단원은 61세 이상의 구민으로 한다. 이 경우 신규로 위촉되는 사람은 위촉일 현재 77세 이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단원은 상한연령에 해당하는 연도의 12월 31일이 경과하면, 제1항제2호의 단원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제1항제3호의 단원은 80세가 되는 연도의 12월 31일이 경과하면 각각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조제1항에 따른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3조의 제목 “(경비의 지원)”을 “(경비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구립예술합창단의 공연·연습 및 이에 수반되는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단원 등의 자격) ① 구립예술합창단 단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제7조(단원 등의 자격)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실버합창단은 61세 이상 75세 이하의 구민으로 한다.	3. 실버합창단원은 61세 이상의 구민으로 한다. 이 경우 신규로 위촉되는 사람은 위촉일 현재 77세 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3호의 단원은 상한연령에 해당하는 연도의 12월31일이 경과하면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보고, 제1항제2호의 단원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단원은 상한연령에 해당하는 연도의 12월 31일이 경과하면, 제1항제2호의 단원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제1항제3호의 단원은 80세가 되는 연도의 12월 31일이 경과하면 각각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해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7조제1항에 따른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생 략)	5.(현행 제4호와 같음)
제13조(경비의 지원)(생 략)	제13조(경비 등의 지원) ①(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구립예술합창단의 공연·연습 및 이에 수반되는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091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문화경제국 문화예술과 박채은
연 락 처	02-3153-8352